

[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]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
<p>제53조(학위지도교수) ①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학부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에 한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,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·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,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.</p>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<p>제20조(학위지도교수)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</p> <p>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,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, 학과간협동과정, 학·연·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할 수 있다.</p>

일반대학원 내규	
제14장 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	
<p>제69조(학위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) ① 학위지도교수는 학칙 제53조,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내규 [별표2]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약입학제 및 학·석·사 연계과정,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제70조(학위지도교수 배정절차)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71조(명예교수 지도교수 배정)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</p> <p>제72조(학위지도교수의 변경)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변경사유”라 한다)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퇴직한 경우 2.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.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.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<p>제73조(학위지도교수 변경절차)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</p>	
[별표 2]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	
구 분	자 격 기 준
논문지도교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문사회계열 :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100점 이상인 자 2. 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 :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300점 이상인 자 (임상교수 제외) 3. 예체능계열·시,소설 등 창작분야 :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100점 이상인 자 <p>* 본 자격기준의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「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」을 적용함</p>